

일체형작업발판대여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 (정의) “일체형작업발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제정한 비계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의하는 시스템비계 및 이와 함께 설치하는 작업발판 등을 말합니다.

제2조 (보증책임) ①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일체형작업발판 대여업자를 말하며, 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 공동계약인 경우 주계약 내용에 따라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보증사고)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4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대여기간종료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대여로 발생한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관련법령 및 계약서 등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2.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3.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권자의 계속 대여로 생긴 금액
4.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
5.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 및 해체비에 해당하는 금액
6. 일체형작업발판 이외에 거푸집, 동바리 등 기타 자재에 대한 대여대금
7. 일체형작업발판 파손·하차 등으로 인한 수리비, 도난·멸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의 성실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2.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3. 선금 또는 대금 수령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으로부터 통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 여부, 납품확인서 및 대금수령내용(어음인 경우 어음사본 첨부)의 사실
- ②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의 사유 및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 또는 채무자가 확인한 내역서, 인수증, 납품확인서 등 보증금 청구금액에 관한 정당한 입증서류
3. 그 밖에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와 제2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제4조의 실제대여로 발생한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대금의 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 또는 채무자가 확인한 내역서, 인수증, 납품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제7조제1항의 통지나 보증금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내역서, 인수증, 납품확인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보증금 지급전이라도 위의 서류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협조 또는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조합이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제13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